

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2. 3. 7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2. 3. 7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02. 3. 1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과장 권병준)

제안이유

- 도시기반시설물 전산화시스템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향후 도시정보시스템(UIS)의 기반을 구축하고
- 지리정보자료를 특정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이용료 징수를 통하여 정보자원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골자

-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책임자 지정함(안 제4조)
-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및 운영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지리정보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지리정보 자료제공 절차 및 제한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사용료 등 징수기준 및 감면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지리정보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정함(안 제15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매설한 가스관 등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타 공사시 파손 등 관리에 문제가 있음. 우선 지하매설물에 대해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도에 기술력을 보완하여 조사를 철저히 할 계획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574호
의결년월일	2002. 3. 20 (제94회)

제출년월일 : 2002. 3. 7

제출자 : 부천시장

 제안이유

- 도시기반시설물 전산화시스템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항후 도시정보시스템 (UIS)의 기반을 구축하고
- 지리정보자료를 특정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이용료 징수를 통하여 정보자원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골자

-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책임자 지정함(안 제4조)
-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및 운영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지리정보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지리정보 자료제공 절차 및 제한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사용료 등 징수기준 및 감면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지리정보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정함(안 제15조)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천시에서 구축한 지리정보시스템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와 지리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기반시설물"이라 함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지하철,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2. "지리정보"라 함은 지형·지불·지명 및 경계 등의 위치와 속성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각종 도형자료와 그에 관련된 속성자료가 포함된다.
3. "유관기관"이라 함은 시·구 및 사업소 이외에 관내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도형자료"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지도·도면 및 위성영상 등이 있다.
5. "속성자료"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대장 및 조서 등이 있다.
6. "지하시설물도"라 함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도 또는 지적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7. "전담부서"라 함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지리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현업부서"라 함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시설물관리 부서를 말한다.
9. "주전산기"라 함은 정보를 저장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장치를 말한다.
10.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장치를 말한다.
11. "지리정보유통망"이라 함은 지리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2. "사용료"라 함은 지리정보 자료를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디스크이나 자기테이프 등)를 통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13. "수수료"라 함은 지리정보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14. "1도면"이라 함은 플로터로 출력된 A1크기($45\text{cm} \times 55\text{cm}$)를 말하며, 1도면의 크기가 A1크기 이하일 경우에도 1도면으로 본다.

제3조(지리정보의 활용 등) 시장은 도시계획·지적관리·교통체계·시설물관리·재난재해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리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지정)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시스템설치 및 관리) ①주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설치 관리하고 단말기는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하시설물 통합관리) ①지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하시설물 통합관리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관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7조(지하시설물도의 작성 및 수정) ①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는 지하시설물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하시설물도를 작성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②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와 지하시설물도는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협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속성자료와 도형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 간접요인이 발생하면 협업부서에서는 1주일 이내에 간접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에 자료의 간접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산자료 간접이 자체 간접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요구)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업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지리정보 제공

제10조(자료의 제공) ① 지리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리정보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용도의 공공성 등을 검토하여 제공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정보제공신청서의 제출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지리정보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지리정보유통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공 제한) ① 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지리정보 자료는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 징수방법) ① 제11조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공 등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리정보를 디스크이나 자기테이프 등 별도의 기록매체에 복제하는 사용료는 별표1에 의하되 10원 미만은 절사

2. 지리정보 전산출력 도면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의함

② 사용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며,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로 한다.

③ 사용료 등은 정보제공 통보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지리정보 복제시 디스크·자기테이프, 광디스크 등의 비용은 신청인이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

2. 전문기술지원기관이 그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와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함께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재난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2. 정보이용 목적이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지역난방 등 지하매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이용되는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에 제공되는 경우
4. 시민편익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 재해예방, 구급체계 구축 등의 전산화 사업에 이용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감면율) 제13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제3장 보안관리

제15조(자리정보 보호) 전담부서의 장은 자리정보를 구축·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공개가 제한되는 자리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자리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의 안전성 확보 및 복구) 전담부서의 장은 자리정보의 멸실·훼손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분(백업화일)을 제작 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화일의 파괴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자리정보 복제사용료(제1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자료명	1Byte 당 단가
지형도	0.1635

[별표2]

자리정보 전산출력 도면발급 수수료(제1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도면종류	1매당 단가
1/1000 이상	7,000
1/2500 이상	8,500
1/5000 이상	10,100
1/5000 이상	11,600

[별표3]

사용료 감면율(제14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 재난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전문 기술지원기관이 그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 ○ 순수한 학술연구 및 학과수업자료를 목적으로 학교장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 정보이용 목적이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 지하철, 송유관 등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 또는 국가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에 이용되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편의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 재해예방, 구급 체계 구축 등의 전산화 사업에 이용되는 경우 	25%